
IT · 금융융합 지원방안

-제1차 IT · 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

2015. 1. 2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우리나라의 IT·금융 융합 환경	2
<참고1> 국내와 해외의 핀테크 발전과정의 차이점 <참고2> 핀테크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III . 추진 과제	6
1.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8
가. 사전규제 최소화	9
(1)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 (2)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 폐지 <참고3> 인증방법평가위원회 개요 (3)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 개선	
나.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14
(1) 특정 기술 사용의무 폐지 (2) 은행·증권사 금융거래상 Active-X 제거 유도	
다. 책임부담 명확화	17
(1) 비금융회사의 법적 책임성 인정 (2)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제도 개선	
라.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19
<참고4> 비조치의견서 운영 현황	
2.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22
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	23
<참고5> 인터넷 전문은행 TF 개요 <참고6>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사례	
나. 클라우드 편딩 활성화	26
다.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27
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산업 기반 지원	28
마. 결제분야 낡은 규제 정비	30

3.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31
가.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32
(1)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참고7> 영국 핀테크지원 전담조직(Innovation-Hub)	
<참고8>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요(미래창조과학부)	
(2) 민간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나.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37
다.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38
(1) 금융투자업권의 선불업 진출 허용	
(2)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의 탄력적 적용	
<참고9> 해외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최소 자본금 규율 현황	
라. 전자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41
마.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42
(1) 영업실질에 따른 업종등록 규율로의 개선	
<참고10>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및 규제방식 비교	
(2) 전자금융업자 성격에 따른 합리적 규율 마련	
4.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46
가.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46
나.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노력 강화	49
<참고11> 그간의 금융권 보안 강화 대책	
<참고12> 그간의 전자금융사기 대응 대책	
다. 온라인 채널의 불완전판매 방지	52
IV. 기대효과	54
V. 추진계획	55
<참고13> 과제별 추진일정	
<참고14> 지원방안별 사례로 본 기대효과	

I. 추진 배경

□ 전세계적으로 IT·금융 융합(핀테크, Fintech*) 트렌드가 확산

* Fintech(Finance+Technology) : IT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모바일 결제, 모바일 송금, 온라인 재정 관리 등) 또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상을 지칭

○ (금융→IT) 금융회사와 IT회사의 제휴·위탁을 통한 IT기술을 융합 신규 금융서비스 창출이 점증 * 사례 : 모바일뱅킹, App 카드

- 금융업의 기존 오프라인 영업점점이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확대

* 세계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가트너) : ('13년)241조원 → ('17°)756조원

-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을 통한 대출심사의 전문성 제고 등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방식의 혁신도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

○ (IT→금융) 혁신적 IT기업의 금융·결제업 직접 진출도 활발

* 사례 : 애플페이, 알리페이, 사파리콤,뱅크월렛카카오, 모바일 T머니

- 애플·구글·페이팔 등 글로벌 IT사업자가 금융관련 인·허가를 획득하며, IT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범위를 지속 확대

- 특히,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비교적 낮은 금융 발전도, 부족한 지급결제 인프라를 대신하여 IT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활발

□ 늦었지만, 새로운 분야 선점으로 성장동력 육성 전략 필요

○ IT·금융 융합 기조에 대한 국내 금융산업의 소극적 대응은 금융 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

◆ (환경) 글로벌 IT·금융 융합 트렌드 확산, 국경간 상거래 증가,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 지속 증대

➡ (방향) 핀테크 산업 등 IT·금융 융합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추진

II. 우리나라의 IT·금융 융합 환경

1

긍정적 환경

- ☐ (ICT 강국) 세계적 수준의 ICT기술, 초고속 통신망 등 ICT 강국의 저력이 있고, 우수한 금융인력, IT전문가 등 관련 인적자원 풍부
- ☐ (열광적 소비자) 온라인·모바일 환경 변화와 첨단 IT기술에 대한 적응력과 친화력이 높은 적극적 소비자들이 풍부하게 존재
- ☐ (정부와 금융회사 인식 변화) '14년 공인인증서 및 ActiveX 폐지, 간편결제 등을 적극 추진하였고, 향후 지속적 핀테크 지원을 계획

2

부정적 환경

(1) 핀테크의 틈새시장이 적은 국내 금융산업의 특성

- ☐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습관*, 성숙단계에 접어든 금융산업(비교적 적은 금융소외 계층) 등으로 대체적 금융거래수단·방식의 활용 저조

* '13년 민간소비 대비 카드사용액 비중 : 66.5%

(2)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환경

- ☐ (낮은 자율성) 사전적·전지적 금융규제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의 자유로운 개발, 맞춤형 보안체계 구축을 어렵게 함
 - 사전 보안성 심의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신규 서비스 개발시 규제비용이 큰 편
 - 금융보안 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세세히 관리하는 전지적 감독 지향
 - 신규 서비스에 적합한 보안·인증 방식의 채택 등 금융회사의 자체적 판단을 통한 서비스 혁신 및 금융보안 능력 강화를 저해

- (규제 불확실성) 복잡한 금융규제 체계, 신종 금융서비스에 대한 당국의 제재·규율 태도 불확실성 등으로 新서비스 개발 비용이 큼
- (오프라인 시대의 제도) '금융회사 주도의 오프라인 금융거래'를 기본으로 설계된 금융규제체제로 IT융합형 新서비스 구현이 제약
 - 국내 금융업법이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한 규율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또는 新기술 활용을 제약
 - 비대면 실명인증 불허 등 비대면 금융거래상 제약으로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에 한계
 - 클라우드 펀딩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IT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해 법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도 상존
- (산업성장의 미반영) 국외에서 핀테크 혁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의 경우 산업초기단계의 규제가 지속 적용되고 있음
 - 과거 전자금융산업 초기에 설정된 낮은 이용한도, 높은 진입규제 등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

(3)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해 부족

- 핀테크기업은 복잡한 금융규제에 적응을 어려워하는 한편, 금융회사는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상호협력 곤란

(4) 금융보안에 대한 국민신뢰 부족

- 국민들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 등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

➡ 핀테크 혁신 저해규제 등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고, ICT 강국과 열광적 소비자라는 긍정적 요인을 심분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참고 1

국내와 해외의 핀테크 발전과정의 차이와 전망

- 각 국가별 **금융인프라 수준, 상거래 여건, 정부의 정책방향** 등의 차이에 따라 핀테크 산업의 발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결제가 느리고, 신용카드 도용 사고도 빈발함에 따라,페이팔 등 결제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신속·간편한 결제서비스가 개발되어 큰 호응을 얻음
 - (중국) 신용카드 시스템, 금융기관 창구·ATM 등 지급결제 인프라가 미비하였고, 상거래 관련 사기가 빈번하여 결제대금 예치 방식(escrow)의 충전식 전자지갑 서비스인 알리페이가 큰 호응을 얻음
 - * 또한,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유통사업자(이베이, 알리바바)의 독점적인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면서 크게 활성화된 측면
 - (한국)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의 결제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결제·송금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여 별도의 지급·결제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따라서, 국내의 경우 향후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이 불편한 간편결제, 해외송금 등의 분야에서 우선적 변화가 나타날 전망
- 그러나, 핀테크가 단순한 IT기술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 금융회사가 과거의 보수적 관행에서 벗어나 핀테크가 새로운 혁신의 단초라는 인식하에 주도적·창의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 금융회사가 중심이 되어 IT기업들과 상생하는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 그리고 IT기업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필요

① 금융상품 · 서비스의 판매채널 다양화

-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채널 다양화로 고객 편의성 제고
- 금융회사 지점을 통해서만 취급할 수 있었던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통신사 · 유통업체 · 인터넷업체 등에서 취급되는 방향으로 변화

② 경쟁 격화에 따른 금융서비스 혁신

- Fintech 시장내 치열한 경쟁 촉발로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등 금융서비스의 양적 · 질적 업그레이드 기대
- 애플사의 애플페이,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의 코드스캔 방식 결제 서비스 등은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바람직한 변화

③ 오프라인 · 인터넷에서 모바일로의 재편 가속화

- 스마트폰 보급과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서비스의 중심이 기존 오프라인 및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급속히 재편
- 예·적금, 대출, 카드 등 전통적 금융서비스가 편의성이 뛰어난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

④ 금융과 IT간 다양한 합종연횡 촉발

- 금융회사는 인터넷 은행 인수, IT기업 제휴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 고객을 흡수하며 수익기반 잠식
- 중국 평안보험과 알리바바가 제휴 설립한 중안보험(온라인 전용 보험사)과 같이 금융권과 IT업체간 제휴가 공고해지는 흐름도 출현

Ⅲ. 추진 과제

■ IT·금융 융합 지원 업무계획의 목표와 과제

- IT·금융 융합 관련 금융거래 및 규제 환경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IT·금융 융합 지원의 3가지 방향 및 금융보안의 토대

- 핀테크는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러한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변혁시키고
 - 나아가 기존의 업종규율과 규제방식은 융합·창의·혁신을 요구하는 핀테크 창출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시킬 필요
 - 금융위는 이러한 인식 하에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3가지 핵심적 지원방향과 그 토대가 되는 금융보안을 중심으로 마련
- ① **(규제 패러다임 전환)** 우선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하여 자율·창의·혁신에 의한 IT·금융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 ②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그 위에 창출된 핀테크 기술이 금융에 접목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맞게 고치고,
 - ③ **(핀테크 산업 육성)** 혁신적 핀테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전자금융업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
 - ④ **(금융보안 토대로 소비자 보호)** 한편, 핀테크도 정보보안을 토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砂上樓閣)임을 직시하되, 보안 규제의 방식은 선진형 규제방식(사후점검 + 책임 명확화)으로 개선

1.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책임부담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회사가 신규 서비스 개발, 보안능력 강화 등에 소극적

➡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

■ 추진 방향

- 금융회사가 법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IT기술을 도입하고, IT회사들은 기본 원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금융·결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자율·혁신으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제도 개선으로 연결 필요

■ 주요 과제

- ㉠ 사전규제 최소화 :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 과잉규제 개선 등
- ㉡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 특정기술 사용의무 폐지 등
- ㉢ 책임부담 명확화 : 비금융회사의 책임 인정, 배상책임보험 현실화 등
- ㉣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적극 실시 등

가 사전규제 최소화

(1)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

(가) 현행 제도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전산센터 구축·이전, 신규 전자금융 업무 출시 등 보안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보안성심의를 요청해야 함

< IT부문 신규사업 추진시 단계별 보안대책 현황 >

단 계	사업계획		사업추진	사업완료	운 영
대 책	자체 보안대책 수립·보안성 심의	보안성 심의		취약점 분석평가	정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점검
수 행	금융회사	금융위·금감원		금융회사	금융회사

(나) 문제점

- (금융회사 부담 과중) 심사대상이 광범위¹⁾하고, 심사기간²⁾이 사안마다 상이 → 금융사의 부담이 크고 사업 추진일정 산정이 어려움

1) 보안성 심의 건수 : ('12년) 99건, ('13년) 77건, ('14년) 139건

2) 보안성 심의 심사기간 : 통상 2개월이나, 사전협의 및 보완기간 포함시 6개월

- 중요 IT부문 사업 前 회사별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및 자체 보안 대책 강구, 사업 後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시 과징금·과태료 추진 및 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보안성 심의가 이중부담으로 작용
- (보안수준 확보의 한계) 보안성심의를 통한 新기술 검증의 한계 상존, 금융사의 사후적인 서비스 보안점검 노력 저해 가능성
- 서면점검 위주인 심의 방식, 금감원의 기술검증 관련 설비 및 전문인력의 한계 등으로 新기술 보안성 검증의 한계
 - 반면, 일부 금융회사는 보안성심의를 보안 확보의 '확인' 또는 '면책 수단'으로 생각하여 사후적인 보안 확보 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

(다) 개선방안

- 신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는 전면 폐지
- 대신, 전자금융서비스의 보안 수준에 대한 사후적 점검을 강화

① 금융회사의 자체 보안 점검 내실화 유도

-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내실화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운영을 개선

* 금융회사는 신규 서비스 출시시 1개월 내에 금감원에 자체적인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함(전자금융업법 시행령 제11조의5)

② 신종 거래구조, 신종 인증수단 등을 채택하여 보안우려가 있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후적 검사 강화

- 신규 서비스 출시 전 자체 보안성 심의의 충실한 수행 여부 점검 등 금감원 정기 검사시 보안성 검사를 강화
- 보안우려가 큰 중요 IT서비스에 대해서는 테마검사를 적극 활용

③ 전자금융서비스의 보안상 우려가 큰 경우* 서비스 보완 지시, 제재 등을 통한 사후적 금융보안 확립이 가능한 체계 구축

* 예 : 서비스 구조 또는 보안체계상 전자적 침해행위 또는 정보유출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사후적 서비스 보완 지시* 등의 근거 마련

* 서비스의 보안수준 취약점 공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개선·보완 필요조치 권고·명령 등

(라) 추진계획

- (2분기) 전자금융감독규정(§36) 및 시행세칙 개정
- (2분기) 사후적 금융보안 체계 확립의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2)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 폐지

(가) 현행 제도

- ☐ 전자금융거래시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필요*

* 전자금융감독규정 37조 (공인인증서 사용기준)

-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운영 중(‘10.9월~)

(나) 문제점

- ☐ 인증방법평가위원회가 계속 운영되면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수단에 대한 사전규제가 사실상 계속 남아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

- ☐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인증기준 통과가 어려워 사실상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기술의 사용·개발을 저해하는 제도로 작용 중

* 공인인증서가 인증수단의 표준이 아님에도 공인인증서 체계와 유사한 기준을 통한 평가를 실시함에 기인

** ‘10.9월 이후 인증기준을 통과한 것은 LG CNS의 MPay 2.0이 유일

- ☐ 공인인증서 등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기술중립성 원칙에 위배 (전자금융거래법, ‘14.10.15 개정)

(다) 개선방안

-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

*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추진계획

- ☐ (2분기) 전자금융감독규정(§37) 및 시행세칙 개정

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설치 현황

□ 국무총리실 주관 T/F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는 인증방법을 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 시 인증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10.5.31)

-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외 인증방법평가를 위한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금감원 내 설치('10.9.20)

* 10명 민간위원(금감원장 추천 5인, 국무총리실 등 5개 정부부처 추천 5인)으로 구성

나.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운영경과

□ '10.10월 이후 인증방법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것은 총 3건에 불과하며, 그 중 단 1건만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방법으로 평가

< 인증방법 안전성 평가 완료현황 >

평가요청기관	평가기관	인증방법명	평가완료일	평가등급
페이게이트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Amount authentication version 1.0	2012.9.5	보안 나군 ¹⁾
LG CNS	한국시스템보증	일회성 인증방식을 이용한 스마트폰 간편결제 1.0	2013.3.7	
LG CNS		일회성 인증방식을 이용한 스마트폰 간편결제 2.0	2014.6	보안 가군 ²⁾

주 1)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30만원 미만 결제에만 사용

2)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인증방법으로 30만원 이상 결제에서 사용 가능

(3)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 개선

(가) 현행 제도

- 「전자금융거래법」 등 현행 IT 보안규정은 기술적 조치사항을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전지적 금융규제를 지향

* 예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9조(건물에 관한 사항) 2. 비상시 대피를 위한 비상계단 및 정전대비 유도등을 설치할 것

(나) 문제점

- 지나치게 세세한 보안규율로 사실상 금융당국이 일률적 보안 구조의 구축을 강요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노력을 저해
- 금융회사가 법규상 보안조치 이외에 추가 조치는 소홀히 하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동 법규를 면책근거로 활용할 우려

(다) 개선방안

- 지나치게 세세한 전산 시설·정보기술·정보처리 시스템 보호 규제를 원칙중심의 보안체제로 개선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추진 중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사례('15.1월말 개정 예정)

- (단말기 보호대책) 단말기 보호대책의 중요원칙만 제시
 - * (기존) 단말기별 취급자 및 비밀번호 지정, 화면보호기능 부여 등 제시
→ (개선) 단말기가 권한 외 자에 의해 무단조작되지 않도록 자율적 조치
- (공개용 웹서버 관리 대책) 금융회사의 자율적 웹서버 관리를 허용
 - * (기존) 공개용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계정 또는 서비스번호 삭제 의무 등
→ (개선) 공개용 웹서버에 업무관련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자율적 조치

(라) 추진계획

- (2분기)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내 IT보안 규정을 '존치 규제, 폐지규제, 가이드라인 전환 규제'로 분류하여 개정
- (3분기) 필요시 IT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나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1) 특정 기술 사용의무 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행 금융관련 법규는 공인인증서 등 특정 기술 또는 보안 방식 등을 법규에서 의무화하거나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보안 구조 설정 노력 및 다양한 보안·인증 기술의 개발·활용을 저해

(나) 개선방안

- ☐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을 단계적 정비

< 기술중립성 원칙 >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4.10.15)에 따라 정부가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기술중립성의 원칙이 도입됨

* 전자금융거래법 §21(안전성의 확보의무)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 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해외의 기술중립성 사례

* 미국 연방금융기관검사위원회(FFIEC)는 '05년에 발표한 '인터넷뱅킹 환경의 인증 가이드라인'에서 인증방법에 있어서 특정기술을 강제하지 말 것을 권고

- ☐ 우선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전자금융거래시 특정 기술을 강제하는 조항은 일괄 폐지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전자금융감독규정 §37) 폐지

○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 의무 폐지)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 평가·인증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 폐지 (전자금융감독규정 §15)

- 일명 CC인증*으로 불리는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를 폐지하여, 금융회사 자율적 판단하에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솔루션 활용 가능

* CC(Common Criteria)인증 : IT 제품이나 특정 사이트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기술 보안평가를 위한 국제 표준

□ 타 금융업법상 기술중립성 저해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업권 내 거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폐지·개선 추진

※ <참고> 특정기술 사용의무 폐지와 관행의 변화

□ 정부의 법령상 특정기술 사용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금융회사는 보안기술 또는 인증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 가능

○ 새로운 인증기술을 개발·적용할 때까지는 공인인증서 등 기존의 기술을 계속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변화가 즉각적으로 '이용자'의 금융거래시 사용기술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음

○ 다만, 이용자의 불편이 제기되는 기술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 하에 관련 서비스 제공방식 등을 개선코자 할 것으로 기대함

(다) 추진계획

□ (1분기) 각종 금융법규정상 개선대상 파악 및 개정안 마련

□ (2분기)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3분기) 개별 금융업법상 기술중립성 저해 규정 개선

(2)

은행·증권사 금융거래상 Active-X 제거 유도

(가) 현황

- Active-X는 금융규제가 아닌 인터넷상 활용되는 특정기술에 불과
 - 다만, 금융회사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공인인증서 확인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Active-X를 활용

(나) 문제점

- 금융회사들은 해킹, 전자금융사기 등이 빈발하는 상황 하에서 보안 프로그램 또는 공인인증서를 지금 당장 제거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
 - * 외국에서는 과거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설치를 요구하거나 선택권을 제공(日은행의 경우 한국의 보안프로그램을 수입)
 - 따라서, Active-X를 대체하는 범용프로그램*(예:EXE)이 필요하나, 여전히 설치방식인 점에서 유사
 - * Active-X는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
-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불필요한 방식(비설치방식)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후적 보안장치(FDS 등) 고도화 등 보안기술 확보를 위해 상당기간이 필요

(다) 개선방안

- 非설치 방식의 안전하고 편리한 新보안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활용을 적극 독려
- 다만, 非설치방식 기술개발 전까지는 금융사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Non-ActiveX 방식(EXE 등 범용프로그램 방식) 권고

(라) 추진계획

- (연중) 은행·증권사 대상 Non-ActiveX 설명회 개최
Active-X 제거 유도 및 업권별 이행상황 점검

※ 미래부가 주관하는 Active-X 제거 로드맵 하에서 금융권도 보조를 맞추어 추진

다 책임부담 명확화

(1) 비금융회사의 법적 책임성 인정

(가) 현행 제도

- ☐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제휴 등을 통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시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부담
 - 비금융회사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차적 배상책임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비금융회사에 대해 구상권만을 행사

(나) 문제점

- ☐ 금융회사가 법적 책임, 평판 위험을 다 떠안는 구조는 금융회사의 보수적인 영업행태를 조장하고 신규기술의 수용을 꺼리게 함
 - 따라서, 대형 IT회사, 핀테크 사업자들은 사고책임 부담 능력이 있고, 책임부담 의사가 있음에도 금융회사와의 서비스 제휴가 어려움

(다) 개선방안

- ☐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사고책임 부담능력 검토를 거쳐 비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전자금융거래법상 비금융회사의 책임 부담 관련 예외조항 신설

(예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2(전자금융보조업자의 책임 예외) ①제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법 제9조 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계약에 따라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9조 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능력에 대해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

* (시행령 예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책임 부담금액,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재무구조 및 책임보험 가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상책임능력을 측정

(라) 추진계획

- ☐ (2분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9 등) 국회 제출

(2)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준비금 적립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
 -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정('06년) 당시 설정된 보험 가입 최저 한도*가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금융투자업자	자금이체업자, 직불업자	기타 전자금융업자
*	20억원	10억원	5억원	2억원	1억원

- 대부분 책임이행 보험을 법규상 최저 보상한도 수준으로 가입

-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 범위 및 거래금액 확대 등으로 전자 금융사고시 피해금액 및 건수가 증가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보상한도는 1~2억원에 불과하여, 소비자에 대한 사고배상 책임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

(나) 개선방안

- 전자금융사고 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되, 사고발생 건수, 지급거래 처리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자금융업자 내 차등적 적용
 - (보안리스크가 큰 전자금융업자*) 보험가입 최저한도 상향
 - * 기준 예시 : IT보안·정보보호평가 결과 4등급 이하, 연간 중대한 금융사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상 사고보고 기준) 10건 이상 등
 - (취급거래규모가 큰 전자금융업자*) 자본금 등 사고대응능력을 감안하되, 전자금융거래규모에 비례하여 보험가입금액도 증액
 - * 예 : 월평균 지급거래금액 또는 전자기급수단 발행잔액이 일정금액(50억) 이상

(다) 추진계획

- (2분기) 전자금융감독규정(§5) 개정

* 중대한 전자금융사고 보고의 고의적 누락에 대한 제재 강화 병행 추진

라 규제에 예측가능성 제고

(가) 현황

- 법적 불확실성은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 출현을 저해
 - (금융회사·IT기업) 관련 규율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법적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의 서비스 출시시 제재 또는 규율태도 변경을 우려
 - (금융당국) 향후 예상치 못한 금융소비자 피해 또는 금융시스템 혼란 발생을 우려하여 기존 법률의 보수적 해석을 유지하는 경향
- 급변하는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관련 사업자와 금융당국간의 주기적 소통창구 부재

(나) 문제점

- 신규 서비스에 대한 법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핀테크 업체의 신규 서비스 개발 의욕을 저해
 - 입법 미비 사항, 애매한 법규정 등에 대한 당국의 입장정리 지연으로 적시성 있는 서비스 도출 등 사업화에 애로

< 참고 : 금감원 핀테크 상담지원센터상 핀테크 업체 애로 분야 >

▶ 「핀테크 상담지원센터」의 핀테크 기업 상담 사례('14.11~12월 기준) 중 81%가 금융관련 등록·보안성심의·유권해석 등 법령해석 및 적용 관련 사안

* 단순 상담 및 핀테크 기업 창업 관련 질의 등은 19%에 불과

➔ 핀테크 기업이 금융당국에 기대하는 주요 관심사항은 불분명한 금융 법령의 상세한 해석 및 해설, 제재 적용 가능성 판단 여부 등에 집중

- 핀테크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규율실익도 없는 규정·행정지도가 지속 유지되거나, 유지된다고 시장에서 인식되는 사례*가 발생

* 예 : 전자상거래시 카드사 제공 결제시스템 사용 의무화 관련 행정지도
→ 폐지·종료되었음에도 제대로 공지·인식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된 사례

(다) 개선방안

- ① 환경변화에 따른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적극적 법해석을 통해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 확보
 - 전자금융분야 규제에 대한 유권해석 및 주요 민원답변 등을 담은 설명서 또는 FAQ를 제작·배포
- ② 현행 법률상 관련 규율의 범위가 불분명한 등 법적 불안전성이 있는 서비스·상품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의 활발한 활용 유도
 - * (개념)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
 - ** (효력) 금융위 위원장(또는 금감원장)이 심사청구행위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 배제
 - 핀테크 사업자 등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비조치의견서 발부의 실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조치의견서 신청에 적극 대응
 - 법적 공백 등이 있어 법령 제·개정을 통한 서비스 허용만이 가능한 경우에는 향후 검토·개정 일정 등을 명시하여 회신
- ③ '14.11~12월 중 한시적으로 운영된 「IT·금융융합협의회」를 '15년도에도 계속 운영하여 핀테크 관련 사업자·금융회사·금융당국간 소통 강화
 - * 협의회 구성위원·논의주제 등은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 ④ 「핀테크 지원센터」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출시 단계부터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여 현행 법률 등의 적용 불안을 해소

(라) 추진계획

- ☐ (2분기) 전자금융분야 설명서·FAQ 제작·배포
- ☐ (연중) 「IT·금융 융합 협의회」 개최

* 입법 미비사항, 규제개선 필요사항 등을 추가 발굴하여 관련 법규정 개정 추진

□ 비조치의견서 운영 현황

- 약 10년 동안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수요자의 상당수가 비조치의견서를 모르는 실정
- ⇒ '14.10월 제2차 「금융혁신위원회」에서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 ('14.10)

- ① 비조치의견서 요청경로 일원화 : 비공식적 접촉에 의한 공문 또는 구두질 의에서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
- ② 비조치의견서 활용 홍보 강화
 - 준법감시인 워크숍, 금융회사등에의 정기적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제도개선 취지를 전달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
 -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제도 운영 매뉴얼」 배포하고, 금융회사등 실무자들의 유권해석등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피드백
- ③ 유권해석과의 차별성을 명확히하여 적절한 활용 유도

< 비조치의견서 제도 >

- ① (대상) 금융환경 변화(新금융상품 개발, 新사업영역 진출 등)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 법령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특정 행위의 제재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
- ② (작성사항) 유권해석과 달리 비조치의견서 요청 시에는 “사안에 기존 법령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작성하는 것이 특징
- ③ (절차) 금감원에서 처리·회신하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회신

2.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규제는 오프라인에 기반

➡ 오프라인 규제를 온·오프라인 융합 및 모바일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재정립

■ 추진 방향

-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온라인·모바일로의 변화 트렌드를 기존의 금융업권별 규율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창구거래·대면거래 중심으로 규율된 각 업권별 제도는 온라인·모바일의 비대면성·쌍방향성·신속성·대중성을 수용해야 함
- 기존 서비스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식 또는 제도의 도입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 주요 과제

- ㉠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
- ㉡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 ㉢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산업 기반 지원
- ㉤ 결제분야 낡은 규제 정비

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

(가) 추진배경

- ☐ 핀테크가 세계적·시대적 흐름으로 인식되면서 국내 핀테크 산업육성과 관련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온라인 전문회사가 증권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는 이미 진입해 있음에도, 은행권에는 엄격한 법률요건 등으로 도입에 제약
 -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틈새시장(niche market) 중심의 전략을 통해 유효경쟁을 활성화
 - * '95년 미국에서 최초 설립된 이후, 은행계(사업부), 보험·증권 등 비은행계 금융사 자회사 및 산업자본(IT기업 포함)의 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중
- ⇒ IT 강국의 장점을 살려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권 업무관행 혁신의 촉매제 역할 등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모델 마련

※ 주요 검토과제 : 소유구조(은산분리 등), 비대면 실명확인, 자본금 규모, 건전성 기준, 업무범위, 물리적 점포 허용여부 등

(나) 추진계획

- ☐ (4월)TF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
 - * 금발심·은행법연구회 등을 통해 별도 의견수렴
- ☐ (4~5월) 제도개선 세부방안(은행법·금융실명제 등) 마련
- ☐ (6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 발표
- ☐ (3/4분기) 관련법안 국회제출

□ TF 구성

- ① (상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KDI 등
- ② (수시)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지주 연구소, 법률 전문가, IT 회사 등

* 회의 주제에 따라 참석대상은 탄력적으로 조정

□ 주요 논의주제 ('15.1월~3월중 매주 회의)

- ① 인터넷 전문은행 해외 사례
- ② 실명확인 방법 합리화 방안
- ③ 은산분리 등 소유구조 이슈
- ④ 자본금·대주주적격성 등 진입규제 이슈
- ⑤ 자산운용 및 업무범위 이슈
(대주주 거래제한, 자금조달 등)
- ⑥ 업무범위 이슈(고유업무, 리스크관리 등)
- ⑦ 업무범위 이슈 (카드, 방카, 펀드 등 겸영업무)
- ⑧ 기타 업무범위
- ⑨ 해외사례 집중분석(벤치마크&실패)
- ⑩ 은행법 내 규율 vs 별도 입법
- ⑪ 예금자보호제도 편입 등

참고 6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사례(설립 주체·형태 별)

설립 주체	설립 형태	인터넷전문은행 예 (괄호는 본점 소재 국가)
은행	사업부	HelloBank(프랑스), Zuno Bank AG(오스트리아) First Direct(영국), Cahoot(영국), Smile Bank(영국), Icesave(아이슬란드), Kaupthing Edge(아이슬란드)
	독립 법인	WeBank(이탈리아)
	별도 법인연계 (주로 증권업)	ComDirect(독일), Boursorama(프랑스), BforBank(프랑스), Fortuneo(프랑스)
은행- 타업종 합자	통신업체 제휴	Jibun Bank(일본)
	포털업체 제휴	The Japan Net Bank(일본)
비은행 금융회사	증권: 브로커리지 서비스 확장	Charles Schwab Bank(미국), Daiwa Next Bank(일본)
	보험: 저축예금 공략	Egg Bank(영국), ING Direct(네덜란드), Sony Bank(일본)
	카드: 지급결제 서비스 확장	American Express Bank(미국)
산업자본	유통: 기존 고객기반 활용	Tesco Bank(영국), Seven Bank(일본), AEON Bank(일본), Rakuten Bank(일본)
	자동차: 자동차금융 특화	BMW Bank(독일), VM Bank(독일), Mercedes-Benz Bank (독일)
모험자본	특화 영업모델	Fidor Bank AG(독일), AlderMore, CC Bank(영국) Holvi(핀란드)
* 자료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나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등 '투자형 클라우드 펀딩' 관련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증권 발행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소액 증권공모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 심의중)

- 현재 클라우드 펀딩 관련 법제 미비로 관련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자금모집 방식의 다양화를 저해

(나) 개선방안

- 클라우드 펀딩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법안 통과 이후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책펀드 등을 통한 시장조성도 적극 추진

- 하위법령 정비 및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 등록** 등 제도 시행 위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

* 투자자의 클라우드 펀딩 투자내역 및 발행인의 발행내역을 관리하는 기관

** 인터넷 펀딩포털을 개설하여 클라우드펀딩 증권의 모집을 중개하는 업체

- 클라우드펀딩 투자에 정책펀드 또는 민간 벤처캐피탈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
-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

(다) 추진계획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히 완료

다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 전통적 보험업, 자산운용업은 오프라인에 기반한 투자권유, 보험 모집 등 일방향적 판매채널에 의존하여
 -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낮고, 투자자 수요와 상황에 맞는 종합적 자산운용서비스 제공에 한계

(나) 개선방안

- ☐ ①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검색·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추진
 - ① 가입자가 스스로 찾아가는 온라인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과는 다른 승환계약, 꺾기 등 보험가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② 현행 협회의 상품비교공시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가입까지 가능하도록 링크 등으로 연결하는 한편,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검색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채널도 도입
- ☐ ②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통해 개인 생애설계에 기반한 맞춤형·복합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
 - * 금융상품자문업(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 :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투자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자문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Individual Wealth Account) : 개인의 생애설계를 토대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한 계좌에서 관리 가능한 계좌
 - 투자자가 IWA 운용에 대해 IFA의 자문을 받아 개인의 니즈와 상황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가능

(다) 추진계획

- ☐ (상반기)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방안 마련,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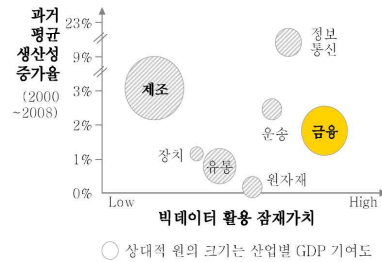
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산업 기반 지원

(가) 현황

- 금융업은 타 산업 대비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크고 빠른 데이터 축적 규모·속도 등) 및 잠재적 활용가치가 높은 편

* 美 맥켄지('11)는 빅데이터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높은 분야로 정보통신, 금융을 제시

< 산업별 빅데이터 활용가치 >



*자료:맥 켄지(KB리포트 재인용)

- 그러나, 금융권은 아직까지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음
- 금융회사들은 신용평가·리스크관리*, 고객마케팅**,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 수준
 - * (Citi) 카드발급·대출심사 정확도 제고 (BOA)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 ** (KB) 고객위치(지점이용)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
 - *** (JP모건) 업무망 기록을 통해 직원비리 적발, (VISA) 카드부정사용방지

(나) 문제점

- 금융권은 빅데이터 적극적 대응이전에 전통적 통계기법과 차이점*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결과의 오류 예방이 가능
 - * 빅데이터의 특징(3V): 정보의 양(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 아울러,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될 필요
 - 작년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 논의가 다소 주춤
 - 금융권이 개인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규제강화 및 소비자 반발(The Big Data Backlash)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의 정보활용 및 영업활동 자체가 위축될 우려

(다) 개선방안

- ☐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
 - 필요시, 금융당국·금융권 공동으로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 * 방통위가 마련 중인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금융권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 후 필요시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 금융권의 빅데이터 관련 영업의 가능범위 및 방식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관련 영업 추진시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
- ☐ 비식별화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新금융상품 개발과 부가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
 -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통합 집중기관이 출범할 경우 同 기관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을 검토
 - * 통합집중기관은 쏠 금융권 신용정보를 집중 → 구조화된 빅데이터 산출 용이
 - * 소비자는 공공성이 담보된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음
 - * 소비자 정보제공시 기관별 선호도 조사(英, YouGov 서베이 결과)
중앙정부 (55%) > 지방정부 (50%) > 보험회사 (36%) > 금융기관 (32%) > 전기회사 (26%)
- ☐ 금융거래(결제·여신·자산운용 기록 등) 정보의 분석·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 금융연수원, 금융관련협회 내 빅데이터 인력 양성 교육 신설, 빅데이터 인력 DB 구축 등
- ☐ 결제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호 업종·지역 등 소비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
 - * 카드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既개정('13.9월), 여신협회의 여신금융연구소('15.1월 신설)를 통해 빅데이터 관련 연구 강화

(라) 추진계획

- ☐ (상반기) 빅데이터 활용 관련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금융연구원과 공동연구 실시
- ☐ (하반기) 필요시 빅데이터 세미나 개최

마 결제분야 낚은 규제 정비

(가)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쇼핑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금융거래 환경 또한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이동
 - 이에 따라 O2O* 등 온·오프라인 융합형 금융거래가 확산
- * Online to Offline :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고 제품 등 실제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제공받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 ☐ 반면, 국내 다수의 금융업법은 오프라인 금융거래를 전제로 한 규제체계를 지녀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 제공을 일부 제약

(나) 개선방안

- ☐ 카드번호 입력과 사전인증(SMS, ARS 등)을 거치지 않는 ‘간편결제’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결제간편화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
- ☐ 실물카드(母카드) 없이도 모바일 카드가 발급 가능하도록 허용
 - *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부재하므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
- ☐ ‘매체분리 원칙(전자금융감독규정 §34) 폐지’ 등 온라인·모바일 및 융합형 결제를 제약하는 낚은 규제 발굴·개선

※ 참고 : 매체분리 원칙

- ▶ (개념) ‘전자금융거래’와 ‘거래인증’의 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
 - * 예 : (전자금융거래수단이 되는 매체) PC, 스마트폰, 태블릿PC
(거래인증수단이 되는 매체) 공인인증서를 담은 USB 등
- ▶ (개선이유) 규정 취지와 달리 보안수준 담보의 실익*은 적은 반면, 결제를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인증수단의 활용을 저해
 - * ① 결제 등 금융거래시 매체의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②매체의 분리 기준이 불명확한 사례가 상존, ③ 매체분리가 곧 보안수준을 담보하지 않음

(다) 추진계획

- ☐ (1분기) 사전설치 없는 간편결제 구현, 낚은규제 정비 방안 마련
 - * ‘매체분리 원칙 폐지’는 ‘15.1~2월 중 개정 완료 예정
- ☐ (2분기)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방안 마련, 낚은규제 정비 방안 추진

3.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 핀테크 기업은 낮은 금융규제 환경, 높은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등으로 금융·결제시장 진입 및 활동에 애로를 호소

➔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등 관계기관의 제도적·행정적·재무적 지원을 집중하여 핀테크 산업을 新성장 산업으로 육성

■ 추진 방향

-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IT기업의 기술 혁신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자금융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 I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위,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련 부처들과의 적극적 협업도 추진할 필요
- ICT 강국의 저력과 결합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

■ 주요 과제

- ㉠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등
- ㉡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 정책자금 지원, 중기창업지원 개선 등
- ㉢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 전자금융업 등록자본금 탄력적 운용 등
- ㉣ 전자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 이용한도 확대 등
- ㉤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 업종 재편, 성격별 건전성 규율 등

가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1)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가)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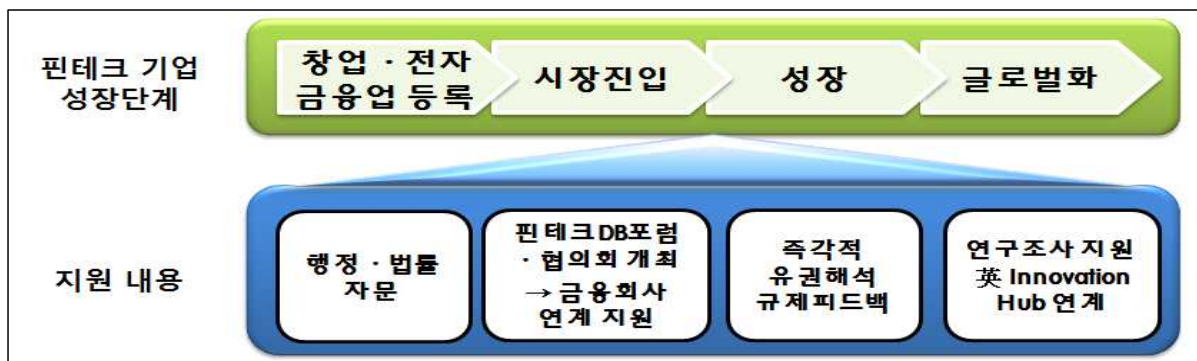
- 발전 초기단계인 핀테크 산업의 특성상 핀테크 기업들은 자금조달, 규제 환경 적응, 금융사 연계 등 서비스 단계별로 다양한 애로를 호소
 - 특히, 다른 IT분야와 달리 복잡한 규제 체계 등이 적용되는 '금융업'에 핀테크 스타트업자들의 적응이 쉽지 않다는 평가
 - 금감원이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구성하여 핀테크 기업에게 관련 행정자문을 하고 있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 필요

< 금감원 핀테크 상담센터 운영상 한계 >

- ▶ 금감원 내 임시조직인 바 예산·인력 부족으로 인한 상담여력의 한계
- ▶ 금감원은 현재 법률 등의 규제 하에서 기본적인 상담 외 업체들의 요구 사항(유권해석, 불합리한 법령 개정, 자금지원 요청)을 직접 해결키 곤란
- ▶ 타부처 연계·협력에 역부족

(나) 개선방안

- 관계 부처·기관(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금융감독원 등) 협력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 핀테크 서비스 단계별로 행정·법률 상담, 자금조달 자문, 금융사 연계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도모



- (자금조달) 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매칭투자제공, 정책 금융기관 기술금융 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인·허가, 등록) IT회사의 전자금융업 등 관련 금융업 라이선스 획득 관련 행정·법률적 자문 제공
- (규제적응) 관계 기관 파견직원 근무,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 규제민원 피드백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

* 예 : (금융위) 전금법 등 금융업법 전반,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중기청) 창업지원법,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사업법

- (금융사 연계) 핀테크 사업자·금융사·유관기관간 포럼·협의회 등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해주고, 핀테크 수요·공급 DB를 구축*

* 핀테크 관련 특정 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기관 등의 DB를 구축하고, 상담 대상 핀테크 사업자의 보유 기술 등을 추천·연결

- 英 FCA 내 핀테크 상담기관인 Innovation Hub와의 정보교류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국제간 네트워크 강화를 병행 추진

☐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주도 하에 구축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효과 극대화

(다) 추진계획

☐ (1분기)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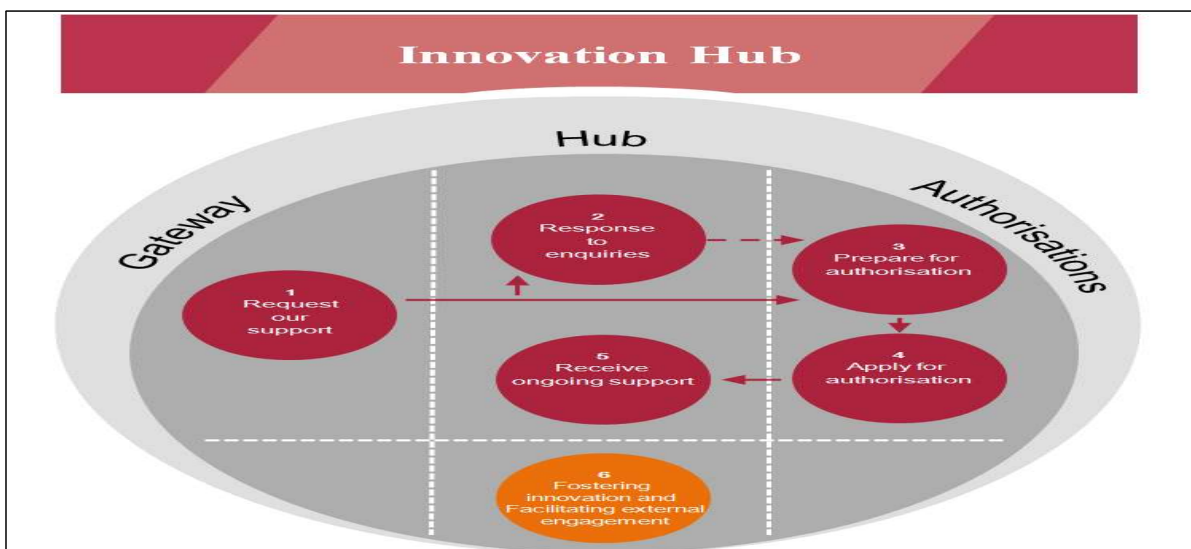
- 미래부·행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방안 마련

☐ (2분기) 「핀테크 지원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계·운영

참고 7

영국 핀테크지원 전담조직 (innovation hub)

- 영국 정부, '14.10.28일 「핀테크 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Innovation Hub'를 영국금융감독청(FCA) 내 설치
- (수행 업무) 제도권 금융회사 외 비금융회사에 대해 신규 금융·결제서비스 출시 지원, 인허가 프로세스 안내
 - 단계별로 전담인력을 지정·운영하여 핀테크 창업기업이 금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
 - * 금융규제 문의응대, 인허가 준비절차 및 사후서비스 등
 - 법규적용 시 명시적 금지 규정 외에는 핀테크 창업기업에 유리하게 해석·운용
 - 행정지원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제도 운영
 - * 허가절차 완료 이후에도 업체가 금융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안내 패키지(EXIT Pack)을 제공
 - 피드백 장치를 마련하여 서비스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협의회, 대외 세미나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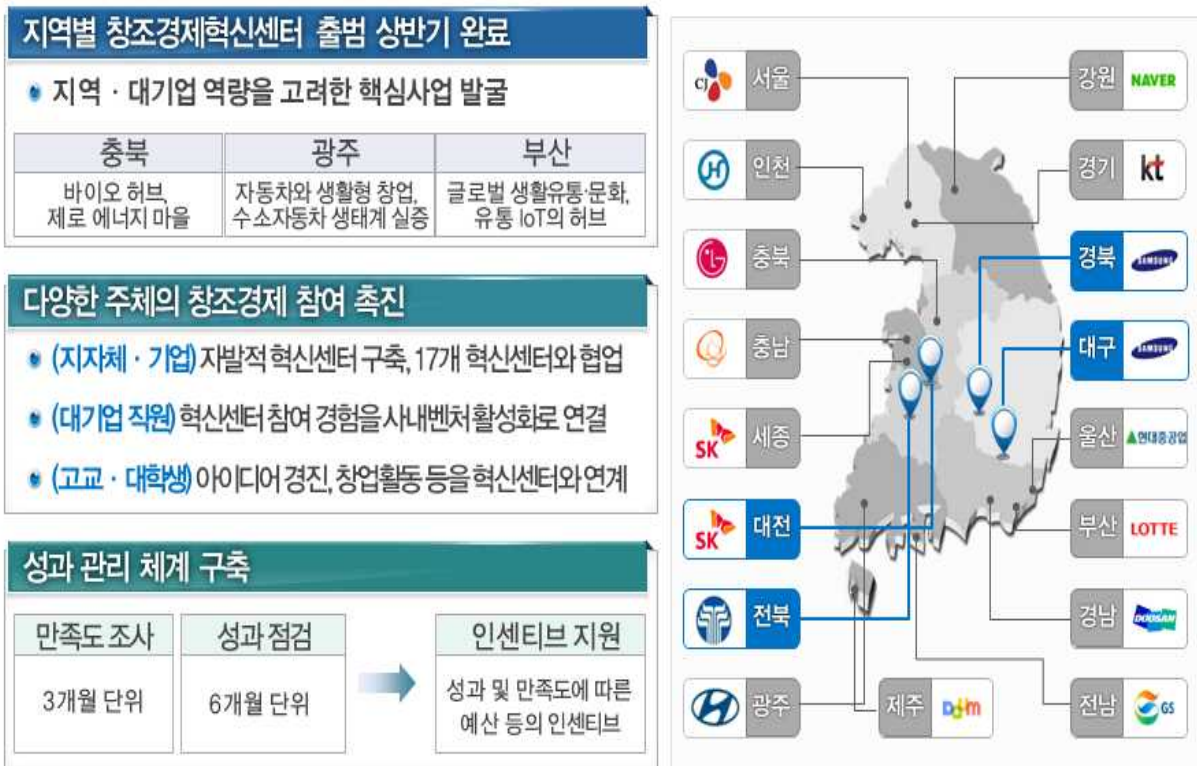


참고 8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금융존 설치 개요

□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요 (미래창조과학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 핵심과제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이하 “혁신센터”)는 ①지역 창업허브와 ②지역 혁신거점으로 설립
 - ‘15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립될 계획
- ⇒ 전주 혁신센터(대전, 대구 이후 3번째 센터, 11.24)부터 “창조금융과 연계”



□ 금융존(Finance Zone) 설치 및 운영 (금융위원회)

- (목적) 혁신센터의 금융 지원을 위한 상담창구
 - (설치) 미래부 및 지자체(대기업) 부담으로 설치
 - (운영) 산·기은, 신·기보 등 각 기관의 창업·중소기업 금융 지원 관련 상담 가능자가 요일별 순환 근무
- ⇒ ‘15년 중 출범할 13개 센터에 모두 설치하며, 설치가 되지 않은 대전·대구 센터도 요청이 있을 경우 설치

(2)

민간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가) 현황

- ☐ 금감원 보안성심의, 인증방법평가 외에 보안·인증수단에 대한 기술수준을 검증하는 민간부문의 제3자에 의한 평가체계 부재

(나) 문제점

- ☐ 인증방법평가 제도 폐지 등으로 금융회사 등의 자유로운 보안·인증 기술 도입이 가능하나,
 - 핀테크 스타트업 등 금융사와 신뢰관계가 낮은 소규모 회사에게는 객관화된 평가 부재가 금융사 신뢰 획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

(다) 개선방안

- ☐ 금융보안원(가칭) 등 정부 외 제3의 기구가 신청기관에 한해 금융 관련 보안·인증방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된 기술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거나 해당기업이 원할 경우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회사 등에 추천

(라) 추진계획

- ☐ (1분기) 금융보안원 내 금융 관련 단위기술 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및 핀테크 지원센터와의 연계 방안 마련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척도 마련, 평가 대상 범위 확정, 평가 결과 도출 방식 등

- ☐ (2분기) 기술평가 전문인력 확보, 조직 구성 등 준비작업 실시

- ☐ (3분기) 민간 기술평가 시스템 운영 시작

나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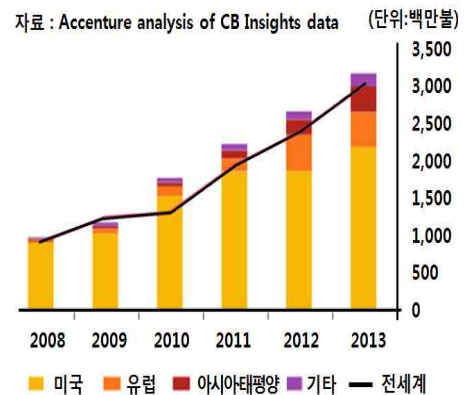
(가) 현황 및 문제점

-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벤처캐피탈 투자제한 등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자의 자금조달이 제한되어 혁신적 기업 출현 저해

- 英 등 주요 핀테크 선진국의 경우 금융회사의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도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미미

* <예> 英 Santander('14.7), 1억불 규모의 핀테크 스타트업 펀드 출범

< 전세계 핀테크 투자규모 >



(나) 개선방안

-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을 다각적 형태로 지원

- (산은·기은) '15년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

* 설비투자·운전자금·연구개발자금 저리 지원,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핀테크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성장성 높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등

- (신보·기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영위 업종을 감안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통한 우대 지원 추진

- 금융사 제휴기반의 IT서비스업자 등 핀테크 사업자가 창업투자 조합을 통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중소기업청 협조)

* (중소기업청, '14.1.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5년 상반기 중 개정 완료 계획

(다) 추진계획

- (2분기) 벤처캐피탈의 핀테크 기업 투자 허용(중기청 소관)

- (연중)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대상 금융지원

다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완화

(1) 금융투자업권의 선불업 진출 허용

(가) 현황 및 문제점

- ☐ 자본시장법령 및 관계규정상 증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전자금융 업무는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에 한정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겸영업무) 등

- 이로 인해, 여타 전자금융업무(선불업 등)를 영위하려는 증권사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나) 개선방안

- ☐ 증권사에 대하여 신규진출 수요가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영위를 허용

등록 전자금융업	증권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현행	개선			
전자자금이체업무	○	○	○	○	○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	○	○	○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X	○	○	○	○

(다) 추진계획

- ☐ (2분기) 금융투자업 규정(§4-1) 개정

(2)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의 탄력적 적용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의 허가(전자화폐)·등록(전자화폐 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

업종	전자화폐 발행	전자자금이체	선·직불	PG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자본금	50억	30억	20억*	10억	10억	5억

* 등록면제 : 총발행잔액 30억원 이하 선불업자, 동일 건물내 제한적 운영 선불업자, 단순 계좌이체 PG

- 해외 사례 등에 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아 핀테크 스타트업자 등의 활발한 진입을 통한 융합산업 수행을 저해

(나) 개선방안

- 해외 사례 등에 비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는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큰 폭 완화

○ 전자금융업종 재정비 이후 재정비된 업종 분류에 맞추어 조정

-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를 신설,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탄력적 진입 규제* 운영

* 예시 : (소규모의 기준) 선불발행잔액 30억원, 분기별 결제금액 10억원 미만

** 대폭 완화된 등록요건(예 : 자본금 최대 1억, 전산인력 확보 기준 하향 등)을 적용하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영업만을 허용

(다) 추진계획

- (2분기)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규율 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국회 제출

*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의 50% 수준 완화는 ‘전자금융업종 재정비 방안 확정(상반기 중 완료)’ 이후 추진

참고 9

해외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최소 자본금 규율 현황

	최소 자본금 현황
미국	• [순 자산] 10만 달러(1억원)~50만 달러(5억원) * 지점수 등에 따라 증액
EU	• [전자화폐발행업자] 35만 유로(5억원) • [송금업자] 2만 유로(3천만원) • [IT기기를 활용한 지급업자] 5만유로(7.5천만원) • [PG, 지급수단발행업자] 12.5만유로(2억원)
영국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면제 (신고서** 제출) * 월평균 지급거래금액 3백만 유로(40억원) 미만 ** 주주 적격성, 금융업법 위반 여부 등을 심사 • [그 외 전자금융업자] 2만 유로(3천만원)~12.5만 유로(2억원)
독일	• [전자결제업자] 35만 유로 (4.5억원)
일본	• [인구 50만 이상 지역 대상 선불업자] 1억엔(10억원) • [기타 지역 대상 선불업자] 1천만엔(1억원)
중국	• [중국 전지역 서비스] 1억 위안(181억원) • [특정 지역 한정 서비스] 3천만 위안(53억원)

라 전자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가) 현행 제도

-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한도를 다음과 같이 설정

전자화폐(발행한도)	선불수단(발행한도)	직불수단(1일 이용한도)
• 무기명 5만 • 기명 200만	• 무기명 50만 • 기명 200만	• 대면 1억 • 비대면 30만

(나) 문제점

- ☐ 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이용한도가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에 비해 낮아 전자지급수단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

(다) 개선방안

- ☐ 기명식 지급수단은 발행권면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체제로 개선 (예시 : 1일 200만원, 1월 500만원)

* 대다수의 국내외 선불수단 지급기관은 ‘1일 및 1월 이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
알리페이 등 선불수단이 발달한 中 정책당국 역시 1일 및 1월 이용한도 설정 예정
(‘14.3월 中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한도 제한 정책 초안)

- 다만, 무기명식 지급수단의 경우 부정확 목적에의 활용(자금세탁, 선불깡 등) 가능성을 고려하여 권면발행한도 제한(50만원)을 유지

- ☐ 직불수단(비대면)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내에서 직불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여전법상 직불카드와의 형평성 제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고려

(라) 추진계획

- ☐ (2분기)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

- ☐ (3분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관련 하위규정 정비

마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1) 영업실질에 따른 업종등록 규율로의 개선

(가) 현행 제도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서비스의 실제 지급·결제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 금융 서비스 제공 양태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분류
 - 반면, 다수의 전자금융업권에 걸친 전자금융업간 융합형 서비스 등장 등으로 전자금융업권의 형식적 구분이 불분명한 사례*가 증가
 - * 예 : 선불수단의 경우 모바일 카드 기술과 선불수단의 ‘환불’ 규정을 우회하여 활용한 자금이체적 성격의 서비스가 등장
- 전자금융업종 간에도 구분이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상존
 - 예컨대, 전자화폐와 선불수단은 실질상 구분이 불명확*하나 범용성·환급성 등에 따라 둘을 구분하고, 이원화된 규율을 적용
 -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며 거래규모 등을 기준으로 발행기관에 대한 규제방식을 결정
 - 선불업은 등록업인 반면 전자화폐발행업은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환급·양도 방식 제한, 자산운용 규제의 강화 등 보다 엄격히 관리

(나) 문제점

- 현행 전자금융업 분류로는 기술혁신에 따른 지급서비스 제공 방식 다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 핀테크 사업자들의 업종 등록 및 사업 관련 규제상 혼란을 초래
- 형식적 업권 구분을 활용한 규제 회피, 감독 사각지대 발생 우려

(다) 개선방안

- ☐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하여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
 - 실질이 유사한 전자화폐와 선불지급수단은 통합하여 관리하되, 서비스 실질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차별화
 -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업은 대부분 동일 사업자가 겸업하고 있고, 정산자금 보유기간 외 차이가 없는 바 통합
- ☐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요건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서비스 실질에 맞춘 업종 등록·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구조의 전자금융영업을 입법 미비 없이 포괄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업권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핀테크 관련 서비스 설계시 혼란을 방지
 - 직접적인 금융거래의 효과가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경우 요건·형식과 무관하게 전자자금이체업으로 규정하거나, 관련 건전성 규제 등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감독 사각지대 해소

(라) 추진계획

- ☐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률 전문가,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법령 정비 실무 TF'를 구성·운영하여 법령 재정비 방안 마련
- ☐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제 재정비 방안의 법제화 작업

참고 10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및 규제방식 비교

□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의의 및 요건

구 분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의의 및 요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좌동
	발행인외에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좌동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이용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5개 업종 이상일 것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
	발행자가 현금 또는 예금으로 100% 교환 보장	약정시 최소 20% 이상 잔액 환급

□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제·감독상 비교

구 분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설립 및 영업 규제	영업요건	금융위원회 허가
	인허가요건	금융위원회 등록(금감원 위탁)
	검영제한	자본금 50억원 이상, 유동성 비율 60% 이상
발행	발행한도	자본금 20억원 이상, 유동성 비율 50% 이상
	발행 및 관리	법령에 지정된 업무 이외 금지. 단, 미상환잔액에 대한 금융회사 지급보증 또는 상환보증보험에 가입시 가능
	발행대가	검영제한 없음
	명칭사용	50만원. 단, 실지명의 200만원
감시 감독	발행한도	접근매체에 식별번호 부여, 식별번호와 이용자 실지명의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단, 5만원 이하는 예외)
	발행대가	-
	명칭사용	현금, 예금, 마일리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발행 가능
감시 감독	한국은행 감시	‘전자화폐’명칭 사용 가능
	업무감독	‘전자화폐’ 명칭 사용 금지
감시 감독	한국의은행 감시	검사.공동검사요구대상, 자료제출요구권
	업무감독	검사.공동검사요구대상 아님, 자료제출요구권
감시 감독	한국의은행 감시	금융감독원
	업무감독	금융감독원

(2)

전자금융업자 성격에 따른 합리적 규율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핀테크가 비금융회사의 기존플랫폼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것을 감안할 때 겸업 전자금융업자의 역할이 중요

* 「전자금융거래법」 역시 등록제 전자금융업에 대해서는 겸업을 폭넓게 허용하며 ‘금융전업주의’의 예외를 인정

-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 관리시 전업 전자금융업자를 상정하고 설계된 단일의 규제(건전성 기준 등)를 적용

- 겸업 전자금융업자의 상당수는 자산건전성기준* 등 현행의 일률적 기준의 준수가 어려워 사실상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총 자산 대비 안전자산(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10% 이상

** 설비투자 비중이 높은 통신사, 도로공사 등 주요 겸업PG의 경우 대규모 고정자산 보유에 따라 안전자산비율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

(나) 개선방안

-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을 고려한 합리적 규율 체계 정비를 통해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상 애로를 해소

- 겸업 PG에 대해서는 현행 자산건전성 기준 외의 보완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전자금융업자간 이원화된 규율 체계 마련

* (안전자산 보유 기준 개선 사례) 겸업PG에 대해서는 최근 1분기간 지급 거래액의 5% 이상(예시)의 안전자산 보유 의무 적용 등

※ 건전성기준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사항이나, 이행명령 및 불복시 제재 근거 마련 등 관련 제도의 포괄적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필요

(다) 추진계획

-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률 전문가,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법령 정비 실무 TF’를 구성·운영하여 법령 재정비 방안 마련

-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제 재정비 방안의 법제화 작업

4.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 IT·금융 융합 지원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금융보안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계획
 -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등 기존의 금융보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 세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 보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필요시 보완적 조치를 병행
- * 예 :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발급 허용과 동시에 대면 본인확인 절차 부재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을 동시에 추진
- 다만, 보안규제 방식은 사전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는 선진형 규제방식(사후점검 + 책임 명확화)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가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가) 현행 제도

- (타율적 보안) 그동안 금융권은 금융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규정 및 행정지도를 준수하는데 그치는 타율적 보안체계 지속
 - 美 카드업계의 경우 법규정으로 정하지 않는 분야에서 자율적 보안인증체계인 PCI-DSS를 구축 운영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음*
- * 참고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정보통신망법(§47)에 근거한 정부 주도의 일반적 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

<참고> PCI-DSS 개요

- PCI-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 카드정보 해킹, 도난·분실 사고로부터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브랜드사(VISA, Mastercard, AMEX 등)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카드결제 보안표준

□ (FDS 구축 미흡) 카드업권은 FDS를 운영중에 있으며, 카드사 이외의 금융회사는 단계적으로 FDS 구축을 추진 중

○ 신한은행 등 10개* 은행은 FDS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6개 은행은 '15년까지 FDS 구축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중에 있음

* 신한, 국민, 농협, 외환, 하나, 우리, 씨티, 경남, 전북, 부산

○ 미래에셋증권 등 8개* 증권사는 FDS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4개 증권사는 '15년말까지 FDS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예정

* NH투자,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신한금융투자, 유안타, 하이투자증권

<참고> FDS 개념

-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및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 간편결제 활성화, 전자금융사기* 등을 예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축 운영

* '11.6월 미국연방금융기관검사협회(FFIEC)에서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 부정거래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 구축 권고

** 8개 신용카드사는 FDS를 이용하여 '13년도에는 360억원의 부정거래를 적발

(나) 문제점

□ 타율적 보안체계 하에서는 법규정 준수에만 급급한 나머지 보안 수준이 평준화되어 오히려 보안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 자발적 보안수준 강화 노력을 저해하여 보안수준의 향상이 지연

□ 핀테크의 대표 분야인 지급결제, 송금 등의 간편화는 FDS 구축을 통한 거래의 안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 은행·증권 등의 금융회사와 PG·선불업자 등의 전자금융업자들의 상당수가 아직 FDS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부정거래 방지 미흡

(다) 개선방안

☐ 시장 자율적인 금융보안 인증체계 도입 추진

- 지급결제 관련 참여자간 제휴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들의 보안인증(PCI-DSS, ISMS 등) 획득 유도
-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수준에 부합하고 국내 금융환경에 적합한 보안인증체계를 시장 자율적으로 개발·활용토록 적극 지원

* 현재 금융보안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기존 ISMS인증을 토대로 국내 전자금융거래 특성을 반영한 금융보안인증(F-ISMS) 개발 중

☐ 금융권의 보안관리를 '전사적 위험관리 전략(Enterprise 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수행토록 유도

- '보안'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기술·정책적 보안대책을 통합 수립하고 내부조직에도 자율적 반영 유도
- 자사의 보안수준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입증*하고, 문제 발생시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적 책임' 정착 유도

* 산업보안 인증규격 획득·갱신 내역 및 보안 절차, 관리규정, 소비자보호 방안, 취약점 개선방안 등을 온라인에 공개

☐ 금융권역별 FDS 구축 및 고도화를 지속 독려하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FDS 구축을 적극 지원

- 현재 운영중('14.12~'15.12)인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를 통해 FD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 (구성) 금감원, 금융보안연구원, 주요 은행 및 증권사 FDS 담당자 (운영 및 과제)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FDS 구축 관련 시행착오 및 문제점 논의, 이상금융거래 대응 우수사례 공유 등을 수행

(라) 추진계획

☐ (1분기) 자율적 보안인증체계, 전사적 위험관리 등의 도입 검토

☐ (2월) FDS 관련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 (연중)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

나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노력 강화

(가) 현행 제도

- ☐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전자금융법 제21조 등) 관련 일반 조항에 근거하여 전자금융의 안전성 규율을 진행
-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대책도 보강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기본방향 >

- ▶ 개인정보의 「수집·보유·활용·파기」 등 단계별로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 * 수집정보 최소화 및 과다수집 관행 개선, 비대면 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등
- ▶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 * 징벌적 과징금, 형벌, 행정제재 등을 강화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대책(‘13.7월)을 보강
 - *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 설립, CISO 전임제 도입, 내부 및 외주업체 통제 강화

(나) 문제점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는 포괄적 위임입법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이를 구체화하여 법률 차원에서 명확화 필요
- ☐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지연

(다) 추진계획

- ☐ (2월) 대책의 주요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계류 중)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률 전문가,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법령 정비 실무 TF’를 구성·운영하여 법령 재정비 방안 마련
- ☐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제 재정비 방안의 법제화 작업

□ 디도스 공격 공동 대응센터 설치·운영('10.5월)

- (배경) 금융회사* 및 국가공공기관** 디도스 공격('09.7월)
 - * 신한, 외환, 농협, 기업, 우리, 하나, 국민은행
 - ** 청와대, 국회,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등 (미국도 12개 국가기관 피습)
- (대책) 금융결제원·코스콤에 디도스 공격 대응센터를 설치·운영

□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11.6월)

- (배경) 현대캐피탈 고객정보유출(4.7) 및 농협 전산 사고(4.12)
- (대책) 일정수준의 보안인력(5%) 및 예산확보(7%),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운영, 해킹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온라인 결제 보안강화 종합대책('13.4월)

- (배경) 비씨·KB국민카드 고객(230명)의 부정결제(1.7억원)사고('12.11월)
- (대책) 게임사이트 거래에서의 본인인증과 부정방지 모니터링 강화

□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13.7월)

- (배경) 농협·신한은행 등과, KBS·MBC·YTN 등의 전산 사고
- (대책) 제3백업센터 구축, 전산망 분리운영,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독립성 강화, 침해사고대응반 운영, 금융회사 재재 강화 등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14.3월)

- (배경) 농협·KB·롯데카드의 개인정보 1억건 유출
- (대책)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보안전담기구 설치, 보안관제 범위 확대, 보안점검의 날 운영, 외주용역 단계별 통제 강화 등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12.1월)

- (배경) '09년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이 '11년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필요
- (대책) 카드로 지연입금, 지연인출제, 보이스피싱 신고 전용 홈페이지 구축,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등

*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거래시 추가 본인확인 실시

□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13.12월)

- (배경) 메모리해킹, 스미싱 등 인터넷·스마트폰 기반의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한 신·변종 금융사기 증가
- (대책) 메모리해킹 방지프로그램 적용, 수취계좌 변조의심시 추가인증 (전화·SMS) 실시, 新입금계좌지정제* 시행 등

*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지정계좌로는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하나, 미지정계좌로는 일정금액(1일 누적 100만원) 이내의 이체만 가능한 서비스

□ 종합대책의 성과와 변화 가시화를 위한 보완대책('14.8월)

- (배경) 신·변종 금융사기의 다양화·지능화 및 전자금융사기 대응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 (대책) 지연이체제도 도입, 스미싱 대응 시스템 성능 개선, 스미싱 차단 앱 기본 탑재,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사이버 치료 시스템 확대 등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대책('14.12월)

- (배경) 금융사기의 핵심범죄수단인 대포통장 및 금융회사 보안체계의 취약점을 노린 전자금융사기 증가
- (대책) 대포통장 발생 및 불법거래 근절, 전자금융사기 이용전화번호 중지,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ATM 현금인출 제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협의체 운영 등

다 온라인 채널의 불완전판매 방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동양증권 사태 등을 계기로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제도의 보완이 진행되었으나,

- 온라인·모바일 채널의 경우 비대면 판매라는 특수성이 있어 고객에 대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아 보다 섬세한 관리가 필요

(나) 개선방안

□ 금융상품간 합리적인 비교선택이 가능하도록 공시체계 강화

- 소비자 맞춤형 쏠 업권 비교공시 시스템 도입 등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비교공시와 개별공시를 상호 연계**

* 금융업권간 유사상품 비교공시, 소비자의 재무상황·거래목적 등을 반영한 대화형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추진('15년말)

** (예시)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상품공시 정보 클릭 → 비교공시자료로 자동 이동

□ 온라인 맞춤형 상품설명서 제공 등 온라인 금융상품 설명 의무 실효성 강화

- 온라인상 다양한 소비자별로 적합한 설명자료를 마련·제공*하는 등 온라인 판매채널 특성에 맞도록 설명 강화 방안 강구

* (예시) 금융지식이 충분한 소비자를 위한 상품설명서와 함께 금융지식이 적은 소비자를 위해 금융전문용어를 풀어 설명한 알기쉬운 설명서 동시 제공

□ 온라인 금융상품 광고 규제체계 개선

- 기존의 영상·음성 광고를 전제로 만들어진 광고 규제체계를 온라인 특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 온라인상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인터넷 게시판,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한 유사 투자자문, 보험 설계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제재 강화

* 유사 투자자문 행위 등에 대한 제보·신고 활성화 및 상시 감시 강화,
유사 불법행위에 대한 3진아웃제 도입 등

□ 고령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온라인 금융활동 지원

- PC, 스마트폰 등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해 온라인 금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추진

* 예시) 온라인 청약시 PC 장애, 익숙하지 않은 가입절차,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전화상담원 등이 항시 상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다) 추진계획

□ (2분기) 온라인 맞춤형 상품설명서, FAQ 제공

□ (연중) 온라인·모바일 취약계층의 온라인 금융활동 지원
온라인 금융상품 광고 규제체계 개선 지속

IV. 기대 효과

□ (이용자 측면) 다양한 IT융합형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편의 제고

- 기존 금융상품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다양한 채널로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
 - 클라우드 펀딩 제도 마련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가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채널이 제공되며
 -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채널이 활성화됨에 따라 펀드, 보험 등을 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개인 맞춤형으로 거래 가능
- 전자상거래상 간편결제 활성화, 모바일 카드와 같은 다양한 지급 수단 제공 등으로 결제분야에서의 편의성이 큰 폭 증대
 - 특히, 전자적 방식을 통한 결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감소하는 반면,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결제가능 범위는 증가

□ (금융사 측면) 수익원 다양화 및 차별적 경쟁력 확보

- 국제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기법을 해외 서비스 수출 및 해외 직접진출에 활용
- 금융회사의 자율적·창의적 서비스 개발을 통한 수익원 다양화, 차별적 경쟁력 확보
- 개별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안·인증기술의 활용과 자체적·사후적·지속적 보안 노력을 통해 보안수준의 제고 가능

□ (산업적 측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핀테크산업 성장

-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금융산업 내 안착이 활성화되면서 성장 초기단계인 핀테크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가능
- 금융회사·IT회사 등 다양한 주체간 연계 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져 금융분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금융산업의 활력을 제고

V. 추진계획

□ IT·금융융합 지원 관련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행

-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

*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상반기 내 개정 완료

-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전자금융업 규율 재설계 등 세부 개선방향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방안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이 금번 대책으로 끝나는 일회성 대책이 아닌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15년 중 '제2차 IT·금융융합협의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하여, 상시적으로 핀테크 관련 사업자 및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
- 또한, '금융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 핀테크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아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지속해나가고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

참고 13

과제별 추진 일정

구 분	대 책	관련법규	완료
1.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가.	사전규제 최소화		
(1)	보안성심의 개선	전자금융 감독규정 등	6월
(2)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 폐지	전자금융 감독규정 등	6월
(3)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 개선	개선방안 마련	6월
나.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1)	특정기술 사용 의무 규정 폐지	전자금융 거래법 등	6월
(2)	은행·증권사 금융거래상 Active-X 제거 유도	비법령	연중
다.	책임부담 명확화		
(1)	비금융사의 법적 책임성 인정	전자금융 거래법	6월
(2)	전자금융업자 금융사고 책임 이행성 강화	전자금융 감독규정	6월
라	규제예측성 제고	비법령	연중
2.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	은행법, 실명법 등	6월
나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자본시장법 등	연중
다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비법령	12월
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금융산업 기반 지원	비법령	연중
마	결제분야 낡은 규제 정비	비법령	6월

구 분	대 책	관련법규	완료
3.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가.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1)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비법령	4월
(2)	민간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비법령	7월
나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비법령	연 중
다.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1)	금융투자업권의 선불업 진출 허용	금융투자업 규정	6월
(2)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의 탄력적 적용	전자금융 거래법	6월
라	전자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전자금융 거래법	6월
마.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1)	영업실질에 따른 업종 규율로의 개선	전자금융 거래법	12월
(2)	전자금융업자 성격에 따른 합리적 규율 마련	전자금융 거래법	12월
4.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가.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비법령	연 중
나.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노력 강화	비법령	12월
다.	온라인 채널의 불완전판매 방지	비법령	12월
* 완료기준 : (법률) 국회 제출 (법률 외 법령) 개정 완료			

1. 금융회사의 창의적·혁신적 영업 활성화

□ (사전규제 최소화) 사전 보안성 심의 제도 폐지

- (현행) 금융회사가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보안점검이 끝난 후에 2~3개월에 걸친 보안성 심의를 받게 되어 적합한 서비스 출시 시기를 놓치거나, 관련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었음

→ (개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보안점검을 한 경우 시장이 원하는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이 큼

□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 (현행) 스마트폰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거래가 가능

→ (개선) B은행과 C카드사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과 같은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사용해서 ‘지문인식, 홍채인식’만으로 간단히 자금이체 및 결제가 완료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확보

* 구글 글래스 : 스마트안경인 ‘구글 글래스’에 ‘구글 월렛’ 기능을 추가하여 “송금(Send Money)”를 말하면 음성명령을 인식하여 계좌이체가 되는 서비스를 구현중

2.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 (전자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개선

- (현행) 편리하게 송금을 하고자뱅크월렛카카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권면발행한도(충전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이를 양도받거나 충전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음

→ (개선) 기명식 선불수단의 권면한도는 없어지고, 1일/1월 이용한도만 적용받게 되어 모바일 선불수단의 활용이 보다 손쉬워졌음

□ **(결제분야 남은 규제)**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허용

○ (현행) 실물카드와 연결된 형태로만 모바일 카드 사용 가능

→ (개선) 충분한 본인확인을 거친 후에는 모바일 카드를 실물 카드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카드 발급 비용을 절감

3. 다양한 금융거래 채널 등장

□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클라우드 펀딩 활용 기반 마련

○ (현행)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대출이나 투자와 같은 전통적 자금조달 방식으로 원하는 자금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상존

→ (개선)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다수의 일반개인으로부터 클라우드 펀딩을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보험 슈퍼마켓 도입

○ (현행) 온라인 상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보험회사 사이트에 일일이 접속하여 회사별·상품별 정보를 비교해야만 하는데다, 또다시 온라인상에서 별도로 승환계약이나 꺾기 등에 해당되지 않음을 온라인 양식으로 확인해야만 가능

→ (개선) 온라인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손쉽게 상품을 비교·검색하여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해당 보험회사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가입하거나,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 접속하여 본인 특성에 맞고, 보험료가 적당한 상품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손쉽게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IFA, IWA 도입을 통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 (현행) 채테크를 위해 수많은 자산운용사에 방문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일일이 비교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한 여러 계좌들을 매번 별도로 관리

➔ (개선)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투자자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제시하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로 손쉽게 추천받은 상품을 가입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4. 핀테크 사업자의 등장 · 시장안착 활성화

□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 (현행) 핀테크 스타트업자는 생소하고 복잡한 금융규율 체계로 인해 스스로 행정·법률 절차를 해결하는데만 수개월을 낭비하고, 금융회사와의 접촉 애로로 인해 사업시작에 어려움을 호소

➔ (개선) 핀테크 스타트업자가 「핀테크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법률 해석 및 상담, 금융회사 연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비스의 시장 진입이 손쉬워졌음

□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전자금융업자 성격에 따른 합리적 규율

○ (현행) 통신사, IT회사들이 기존의 보유한 소비자 접점 등을 이용하여 전자금융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적용되는 안전자산 확보 의무 등으로 부담이 컸음

➔ (개선) 겸업 전자금융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로 인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안전자산 확보 등을 적용받게 되어 전자금융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혁신적 기업들이 증가

5. 금융회사·IT회사 연계를 통한 융합서비스 제공 활발

□ (책임부담 명확화) 비금융회사의 법적 책임성 인정

○ (현행) 금융회사가 서비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1차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제휴를 꺼리게 되어 소비자 책임 부담 능력이 있는 대형 IT회사의 경우에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개선) IT회사가 자사의 관리시스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회사와 합리적인 책임 분담을 할 수 있게 되어 금융회사와의 제휴가 활성화되었고, 소비자는 SNS 또는 대형 포털사이트 등 비금융회사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